

#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 2009. 2. 4

## 제1조(목적)

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) 제58조(수수료)에 근거하여 회사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,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적용범위)

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 규정,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자산/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.

### 1. 보수

가. 운용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나. 성과보수 :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(법 제86조,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-6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가능)

다. 판매회사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

라. 신탁업자보수 : 집합투자증권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마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 대신해준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

### 2. 수수료

가. 판매수수료 :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

나. 환매수수료

#### **제4조(수수료의 부과기준)**

-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공모 집합투자기구와 투자일임/투자자문자산 간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차별은 금지된다.
- ③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.

#### **제5조(수수료의 부과절차)**

보수 및 수수료 수준은 운용자산의 특성, 포트폴리오의 규모,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투자자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.

#### **제6조(총비용비율 한도의 관리)**

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과도한 비용발생을 지양하기 위하여 총비용비율한도(TER: Total Expense Ratio)를 관리하며 항상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 되도록 한다.

#### **제7조(수수료의 설명의무)**

회사는 법 제4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에 따라,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.

#### **제8조(수수료의 고지)**

- ① 회사는 투자광고(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)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라,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는 공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법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**제9조(수수료의 인상)**

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0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,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#### **제10조(공시)**

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

한다.

부 칙<2009.2.4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기준에 불구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이 기준 시행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.